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기술본부 국가대표운영팀



TABLE OF CONTENTS

Page

1. 목적	3
2. 적용범위	3
3. 대표팀의 구분	3
4. 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	4
5. 대표팀의 구성 및 인원	4
6.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4
7. 특정 대표팀의 지정	4
8. 경기일정의 결정	4
9. 선수의 소집 및 통보	4
10. 선수소집 개시일	5
11. 훈련 보강기간	7
12. 감독의 선임	7
13. 지도자의 책무	7
14. 선수의 의무	8
15. 보고서	8
16. 포상	8
17. 징계 및 결격사유	8
18. 격려금	9
19. 수당 및 실비의 지급	10
20. 대표팀원의 용품착용	10
21. 퍼블리시티권	10
22. 선수단의 보험	10
23. 대표팀원의 치료와 재활	11
24. 관련 규정의 변경시 적용	11



제·개정연혁

- 1992년 12월 19일 전문개정
- 1993년 3월 11일 개정
- 2003년 1월 개정
- 2004년 7월 2일 개정
- 2006년 1월 6일 개정
- 2008년 3월 31일 개정
- 2014년 12월 29일 개정
- 2015년 8월 20일 개정
- 2015년 11월 12일 개정
- 2017년 1월 16일 개정
- 2017년 7월 17일 개정
- 2019년 6월 11일 개정
- 2021년 5월 25일 개정
- 2024년 11월 12일 개정
- 2025년 1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가 관장하는 각급 축구국가대표팀(이하 “대표팀”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표팀의 운영은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대표팀의 구분

- ① 대표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남녀 팀을 말한다.
1. 성인 국가 대표팀 (이하 “A 대표팀”)
 2. 23세 이하 대표팀 (이하 “U-23 대표팀”)
 3. 20세 이하 대표팀 (이하 “U-20 대표팀”)
 4. 17세 이하 대표팀 (이하 “U-17 대표팀”)
 5.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대표팀 (유니버시아드, 각급 연령별 남녀, 풋살대표팀 등)
- ② 제1항의 각급 대표팀에 상비군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과 관리는 대표팀의 운영과 관리에 준한다.



제4조 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

- ① 각급 대표선수(이하 “선수”라 한다.)의 선발 및 해제는 감독의 건의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 위원회가 승인한다. 단, 감독과의 계약에 따라 선수 선발 및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감독이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각급 대표선수 선발 시, 팀 경기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리그를 계속 관찰하여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잘 구현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도록 한다.

제5조 대표팀의 구성 및 인원

- ① 각급 대표팀은 임원(협회가 필요시 선임한 단장과 감독, 코치, 지원인력)과 선수 (이하 “대표팀원”)로 구성된다.
- ② 각급 대표팀의 선수인원은 25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주요 국제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50명 내외의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 대표팀의 지정

- ① 협회는 특정 축구팀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대표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협회는 지정된 축구팀의 장 또는, 그 축구팀이 소속된 연맹단체의 장에게 대표팀 구성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단체의 장은 대표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경기일정의 결정

협회는 산하연맹과 매년 주요경기 일정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 매년 11월 말까지 상호 합의를 통해 제반 경기(대회) 일정을 확정한다. 단, 12월 이후에 제기된 대회 또는 경기에 대해서는 FIFA 및 AFC 공식대회가 아닌 경우 추가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선수의 소집 및 통보

- ①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에 규정된 기간에 각급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 및 그 소속팀은 협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 ③ 협회는 대표팀 소집일정을 소집일 7일전까지 선수 및 소속팀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하고, 소속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 여부를 협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서면 통보는 이메일 또는 FAX 등을 통하여 한다.
- ⑤ 해당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속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참을 증빙할 서류(부상 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일체의 서류) 및 선수의 불참 사유가 명기된 소속팀 공문을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만일 협회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불참 통보를 받은 선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수는 협회가 지정한 의료진으로부터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결손된 선수 인원에 한하여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소집 통보를 받은 선수가 해당 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대표팀의 소집기간 및 대표팀 해산 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소속팀의 어떠한 공식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단, 소집 이전에 해당 선수의 부상 등 기타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어 협회가 소집을 철회하거나 협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선수는 소속팀의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⑦ (긴급소집)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인원 결손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속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선수소집 개시일

각급 대표팀의 주요 대회별 선수소집 개시일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FIFA 주최 대회

1. FIFA 월드컵

가. 예선

남자대표팀 :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

여자대표팀 : AFC 아시안컵 일정에 의한다. (개막일 20일 전)

나. 본선

남자대표팀 : 개막일 3주전 월요일

여자대표팀 : 개막일 30일 전

2. FIFA U-17, U-20 월드컵

가. 예선 (AFC U17, U20 아시안컵)

남자대표팀 : 개막일 14일 전

여자대표팀 : 개막일 25일 전

단, 남자 U-20 대표팀의 경우 10일 전까지는 소속팀의 경기출전을 허용한다.

나. 본선 : 개막일 30일 전

단, 남자 U-20 대표팀의 경우 15일 전까지는 소속팀의 경기출전을 허용한다.

3. FIFA 풋살 월드컵

가. 예선 (AFC 풋살 아시안컵) : 개막일 20일 전



나. 본선 : 개막일 30일 전

② AFC 주최 대회

1. AFC 아시안컵

가. 예선

남자대표팀 :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

여자대표팀 : 경기 15일전

나. 본선

남자대표팀 : 개막일 14일전

여자대표팀 : 개막일 20일전

2. AFC U17, U20 아시안컵

가. 예선

남자대표팀 : 개막일 10일전

여자대표팀 : 개막일 20일전

나. 본선 (FIFA U-17, U-20 월드컵 예선)

남자대표팀 : 개막일 14일전

여자대표팀 : 개막일 25일전

단, 남자 U-20 대표팀의 경우 10일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을 허용한다.

3. AFC 풋살 아시안컵

가. 예선 : 개막일 10일전

나. 본선 : 개막일 20일전

③ 올림픽대회

1. 아시아 지역예선 : 개막일 10일 전

2. 아시아 최종예선 (Play-off 포함)

남자대표팀 : 개막일 15일전

여자대표팀 : 개막일 15일전

(단, Play-off는 경기일 기준)

3. 본선 : 개막일 30일 전. 단, 20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 허용한다.

④ 친선대회 및 경기

남자대표팀 :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

여자대표팀 : FIFA Women's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

⑤ 기타 대회

1. EAFF 챔피언십

남자대표팀 : 개막일 7일 전

여자대표팀 : 개막일 15일 전

단, 여자대표팀 예선은 개막일 10일 전

2. 아시안게임



남자대표팀 : 개막일 14일 전

여자대표팀 : 개막일 20일 전

단, 남자대표팀의 경우 10일 전까지 소속팀 경기출전을 허용한다.

3. 유니버시아드 대회 (프로선수 제외)

남자대표팀 : 개막일 10일 전

여자대표팀 : 개막일 15일 전

4. 대륙컵 등 기타대회의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한다.

⑥ 기타 위의 각항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의 소집일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훈련 보강기간

① FIFA 월드컵 본선에 한하여 A 대표팀은 해당 해의 1월, 2월 중에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별도의 훈련 보강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② 올림픽 및 FIFA U-20 월드컵 본선에 한하여 해당 대표팀은 해당 해의 1월, 2월 중에 3주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훈련 보강 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③ 대회출전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대회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자 A 대표팀은 연 30일, 여자 U-20, U-17 대표팀은 연 40일 이내의 훈련보강기간을 각각 가질 수 있다.

제12조 감독의 선임

①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 임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

③ 협회는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전임으로 선임할 경우 전임계약을 체결한다.

④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대표팀에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단장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으로서의 능력과 덕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⑤ 지도자 선발은 공개선발 또는 우수지도자의 확보를 위해 특별선발 할 수 있다.

⑥ 선발과정 및 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자의 책무

① 단장은 해당 대표팀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팀의 행정 및 대외적 역할을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표팀 소집훈련 대회참가 선수선발 건의
2. 선수단 관리,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선수의 상벌, 경기력,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
4.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5. 각종 국내·외 참가 대회의 훈련 및 경기결과 보고



6.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7. 기타 대표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의 건의

제14조 선수의 의무

- ① 각급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
- ② 대표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 및 소집에 응할 의무
 2.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지시 및 정당한 인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지시 사항의 이행 의무
 3. 대표팀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15조 보고서

- ① (감독보고서) 대표팀의 감독은 대회 또는, 경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독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술분석보고서) 협회는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기술위원을 파견하고, 기술위원은 대회 및 경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분석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 양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포상

- ① 각급 대표팀의 지도자 및 선수 등에 대한 포상은 협회 포상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 ②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표팀의 운영 및 조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2.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공헌한 자
 3. 선수의 훈련 및 관리에 전념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자
 4. 평소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기력이 뛰어나며, 대표팀의 인화단결에 모범을 보인 자
 5. 기타 포상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징계 및 결격사유

- ① 각급 대표팀의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협회 공정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 ② 징계 양정을 위하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는 징계의 건의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상으로 상정한다.
 1. 고의로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
 6.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7.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자
 8. 승부조작,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247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지 지나지 않은 자

제18조 격려금

- ① 격려금 지급대상 대표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남녀 월드컵 대표팀
 2. 남녀 아시안컵 대표팀
 3. 남녀 올림픽 대표팀
 4. 남녀 EAFF 챔피언십 대표팀
 5. 남녀 아시안게임 대표팀
- ② 제1항 대표팀의 구성원(감독, 코치, 선수 및 단장 등 지원스태프)에 대해서는 협회 예산, 대회의 규모, 성적, 공헌도를 감안, 종전 관례를 참고하여 이사회에 보고 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U-20 이하 각급 남녀 대표팀(감독, 코치, 지원스태프에 한함)의 경우에는 대회 성적,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대표팀의 미성년 선수에게는 포삼품 또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및 실비의 지급

- ① 수당이라 함은 각급 대표팀의 소집, 훈련, 경기에 대하여 협회가 관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일비를 말한다.
- ② 실비라 함은 각급 대표팀의 소집, 훈련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하여 협회가 관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협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표팀원에게 각종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실비의 종류, 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 ⑤ 국고보조 등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 ⑥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대표팀원의 용품착용

- ① 대표팀의 감독, 코치 등을 포함한 임원진과 모든 선수는 대표팀의 공식훈련과 경기 중 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대표팀원의 자격으로 공식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품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는 사전에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퍼블리시티권

- ① 대표팀원 개인의 퍼블리시티권 및 대표팀원 집합적 퍼블리시티권은 원칙적으로 협회가 보유한다.
- ② 대표팀원은 협회의 지시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 경기 종료 후 각종 촬영 및 인터뷰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대표팀원이 자신의 대표팀원 초상을 활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 출연, 출판 등을 할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본 조의 대표팀원 퍼블리시티권, 대표팀원 집합적 퍼블리시티권 및 대표팀원 초상 등에 관한 정의 및 그 활용권리에 관한 사항은 협회 마케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선수단의 보험

구단이나 팀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소속 선수에 대하여 국제축구연맹 규정(FIFA 선수이적 및 신분)에 관한 규정 부록1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표팀 소집기간 중의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표팀원의 치료와 재활

협회는 대표팀 소집기간 중 대표팀원의 부상 발생 시 치료 및 재활 비용을 각급 대표팀 치료 및 재활 시 행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제24조 관련 규정의 변경시 적용

본 규정과 달리 FIFA, AFC에서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각급 대표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20.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16.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프로축구연맹 및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7.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25.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규정 제17조제4항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6.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 제17조제4항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4.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4. 11. 12.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 21.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